



특허청

보 도 자 료



대한민국 대전환
한국판뉴딜

보도 일시	2022. 4. 27.(수) 09:00	배포 일시	2022. 4. 27.(수) 08:30
담당 부서	아이디어거래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 강운석 (042-481-3542)
		담당자	주무관 곽태헌 (042-481-5724)

특허청, '아름다운가게'와 함께 「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」 개최

- 특허청(청장 김용래)은 '아름다운가게'(이사장 홍명희)와 함께 4월 28일(목)부터 5월 27일(금)까지 「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」(이하 '경진대회')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 - 이번 경진대회는 '아름다운가게'로 기부되는 물품 중 훼손, 오염되거나 오래되어 재판매가 어려워진 헌 옷을 재활용하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.
- 특허청의 아이디어 플랫폼(www.idearo.kr, 이하 '아이디어로')에서 경진대회가 진행되며, 제시된 헌 옷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.
 -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5월 27일까지 '아이디어로'를 통해 과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.
 - *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(02-3459-2809, 2728) 문의, '아이디어로'에서 확인 가능
- 국민이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서류평가,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본선 진출자 10명(팀)을 선정하고, 오는 6월 말 최종 순위를 결정할 본선을 진행한다.

- 수상자 10명(팀)에게는 상금과 함께 특허청장상(1),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(3), 한국발명진흥회장상(6)이 수여되며,
 - 수상자의 아이디어는 ‘아름다운가게’와 함께하는 이번 경진대회 취지에 맞게 판매가 아닌 나눔으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.
 - 또한, 수상 외에도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한 아이디어 제공자 전원에게 친환경 물품으로 구성된 ‘환경실천도구(키트)’를 제공할 예정이다.
- 특허청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기업과 공공기관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‘아이디어로’를 작년 3월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는데,
 - 이번 경진대회는 기업의 문제점 해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·환경문제 해결까지 국민의 아이디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, ‘아름다운가게’가 중앙부처와 협업한 첫 번째 사례이다.
-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“전 국민이 아이디어만으로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.”면서 “향후 사회적기업이나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”고 밝혔다.
- ‘아름다운가게’ 윤여영 상임이사는 “특허청과 함께 전 국민의 친환경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.”면서 “이를 통해 자원순환에 대한 아이디어가 활발히 논의되길 바란다.”고 밝혔다.



+



※ 붙임 「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」 개최 공고문



'아름다운가게'와 함께하는 「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」 개최 공고

특허청은 '아름다운가게'와 함께 아이디어를 통해 '아름다운가게'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「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」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2년 4월 27일

특허청장

1

경진대회 개요

□ 목적

-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·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, 아이디어를 나누고 기부하는 문화를 조성

□ 운영주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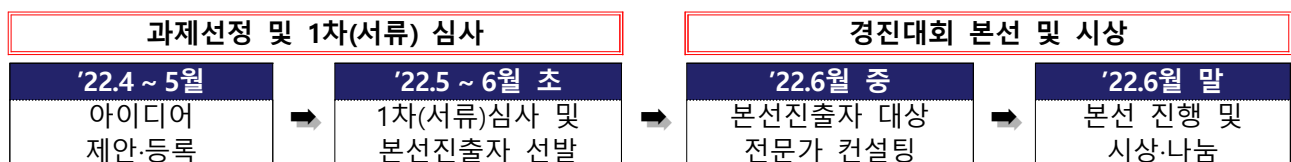
- (주최) 특허청, 아름다운가게 / (주관) 한국발명진흥회

□ 경진대회 과제

- 의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헌 옷 활용 아이디어
※ 자세한 과제 내용은 '아이디어로(www.idearo.kr)'에서 확인

□ 추진절차 및 시상규모

< 경진대회 추진절차(안) >



※ 본 일정은 주관기관 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(변경 시 '아이디어로'에 공지)

- (시상규모) 총 10건 시상 및 총 750만원 상금 부여

2

참가자격 및 신청방법

□ 참가자격

- 제시된 과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민(개인 또는 팀 가능)
 - ※ 아이디어 플랫폼(www.idearo.kr, 이하 ‘아이디어로’) 회원가입 필수
 - ※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(신청일 기준)는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
 - ※ 팀으로 참가 시 4명 이하로 팀원을 구성(팀 신청 매뉴얼 참고)

□ 신청방법

- (기간) '22. 4. 28.(목) ~ 5. 27.(금)
- (방법) ‘아이디어로’ 회원가입 후, ‘오늘의 도전과제’ 메뉴에 제시된 경진대회 과제에 아이디어를 제안
 - 아이디어 제안 시 필요한 추가 자료는 첨부파일로 업로드 가능

3

평가 및 선정단계

□ 1차(서류) 심사

- (일정) '22. 6월 초 예정
- (대상) 과제해결을 위해 제안된 아이디어 전체
- (절차)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본선진출 인원의 2배수(20순위)로 1차 심의·선정 후 선행기술조사 진행
- (선발) 심사결과 상위 10명(팀)을 본선진출자로 선발

< 1차(서류) 심사위원 및 기준 >

심사위원	‘아름다운가게’ 및 외부 관련분야 전문가
선행기술조사	선행기술조사* 결과 ‘동일’ 또는 ‘극히 유사’는 본선 진출에서 제외 * 결과는 ‘동일’, ‘극히 유사’, ‘일부 유사’, ‘신규’로 구분
심사기준	문제해결가능성 30점, 실현가능성(구체성+사업성) 40점, 참신성 30점

□ 전문가 멘토링

○ (일정) '22. 6월 중 예정

※ 구체적인 멘토링 일정과 장소는 추후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예정

○ (대상) 본선진출자 10명(팀)

○ (절차) 외부 전문가·아름다운가게 담당자가 3인 1조로 멘토단을 구성하여 총 2회의 멘토링* 진행

* (1회차) 아이디어 컨셉화 및 구상 / (2회차) 아이디어 구체화

< 각 회차별 멘토링(컨설팅) 계획 >

구분	외부 전문가	아름다운가게 담당자
1회	아이디어 점검 및 시장현황 분석	기존 사업 중복 및 적용가능성 점검
2회	아이디어 구체화 및 방향 점검	적용 방안 구체화

○ (자료작성) 총 2회 멘토링을 거쳐 구체화한 아이디어 내용으로 본선(발표) 자료작성

□ 본선(발표) 심사

○ (일정) '22. 6월 말 예정

※ 본선(발표) 일정과 장소는 추후 '아이디어로'에 공지 또는 별도 통보

○ (대상) 멘토링을 거친 본선진출자 10명(팀)

○ (절차) 구체화·고도화 단계를 거친 아이디어를 본선진출자(팀)가 현장에서 발표 진행

○ (최종순위) 현장 발표를 토대로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최종순위 결정

※ 최종순위가 결정된 후 바로 시상식 개최(경진대회 본선과 같은 날)

< 본선(발표) 심사위원 및 기준 >

심사위원	'아름다운가게' 및 외부 관련분야 전문가
심사기준	문제해결가능성 30점, 실현가능성(구체성+사업성) 40점, 참신성 30점

□ 시상 관련

- (일정) '22. 6월 말 예정 [본선(발표)심사와 같은 날]
- (훈격) 특허청장상 1점(최우수),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3점(우수), 한국발명진흥회장상 6점(장려)

< 시상 분야 및 내역 >

구분		상금	건수	계
최우수	특허청장상	150만원	1건	150만원
우수	아름다운가게이사장상	각 100만원	3건	300만원
장려	한국발명진흥회장상	각 50만원	6건	300만원
합 계			10건	750만원

- (인센티브) 시상과는 별도로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한 아이디어 제공자 전원에게 '환경실천키트' 등 제공*
*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경진대회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(특별상) 본선진출자(팀) 중 아이디어 창출 과정을 V-log로 촬영 및 제출* 시 최대 3팀 선발하여 부상 제공
* 제출한 V-log는 경진대회 또는 사업홍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음

□ 나눔 체결

- (나눔) 수상 아이디어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'나눔증서'를 제공하며, 추후 필요한 기관에 공개하여 활용 예정
※ 심사 결과에 따라 나눔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, 거래내용은 협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□ 문의처

-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(☎ 02-3459-2809 또는 2728)

□ 유의사항

-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권은 제안자에게 있음

- 단, 나눔이기 때문에 제안자는 '아름다운가게'가 무상으로 해당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인지하고 참여해야 함
- 제안자는 '아름다운가게' 뿐만 아니라, 차후 아이디어를 다른 기업·기관에 사용을 허락할 수 있음

- 제안한 아이디어는 직접 착상한 것으로서 차후 타인의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표절, 도용, 탈취한 것으로 확인되면, 이로 인한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은 아이디어 제안자 본인에게 있음

* 본인이 직접 착상한 아이디어라도, 타 공모전에 제출하여 수상한 이력이 있는 등 아이디어가 타인의 소유가 되었을 경우 타인 아이디어로 규정

- 표절, 도용, 탈취 아이디어로 확인되면 거래 또는 시상 후보에서 제외되며, 해당 아이디어로 계약체결 또는 입상한 경우에는 관련 계약과 입상은 취소되고, 거래대금·시상금은 환수
- 공개 아이디어(타 공모전 수상 포함)는 시상에서 제외되며, 시상한 경우라도 공개 아이디어로 확인되면 입상 취소 및 시상금 환수
- 제안자는 경진대회 종료 통보를 받기 전까지 아이디어를 타인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함
- 참가희망자는 개인과 팀 중 1개 부문만 선택하여 참가 가능
- 팀은 최대 4인(팀장 포함)으로 구성, 팀원 모두 아이디어 구상에 기여해야 하며 추후 기여도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

-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 없이 아이디어를 제안 및 거래 (나눔 포함)하는 경우 거래가 취소될 수 있음(법정대리인 동의 필요)
- 제안자는 ‘붙임2’ 기타 항목을 아이디어 제안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, 해당 정보의 미공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
- 추후 아이디어 제안자 실명으로 아이디어 나눔 또는 수상 사실이 보도될 수 있고, 아이디어 제목이 공개될 수 있음
- 시상금 수여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하여야 함
- 본 경진대회는 특허청의 “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”을 준수함 [별첨]

[붙임 목록]

1. 아이디어 제안 시 포함 내용
2. 비밀유지서약서

붙임 1 **아이디어 제안시 포함 내용** *플랫폼에 입력·작성

아이디어 제안 서식	
1.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	· 아이디어 관련 배경기술(있는 경우 해당 출처를 반드시 기재)
2. 아이디어의 상세 설명	· 아이디어 특징· 주요 내용 및 설명(필요시 도면, URL 주소 등을 첨부) · 아이디어 활용 분야 등
3. 기타	· 아이디어 관련 수상여부(있는 경우에 해당 출처를 반드시 기재) · 해당 아이디어를 출원 및 등록한 경우 해당 권리번호 반드시 기재 · 해당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추후 권리화를 염두에 둔 제안자는 해당 내용 반드시 기재

본인은 아이디어를 제안/등록하거나 타인의 아이디어를 상호평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제1조 (비밀유지의 대상 및 범위)

- ① 비밀유지의 대상은 본인이 제안/등록하는 아이디어와 상호평가를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(이하 본인의 아이디어와 타인의 아이디어를 모두 통칭하는 경우에는 ‘본건 아이디어’라 함)의 내용 및 용도에 한정합니다.
- ②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,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본건 아이디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 - 1. 이미 공개된 아이디어
 - 2. 본인의 아이디어를 제안/등록하기 이전부터 아이디어를 제안받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‘아이디어 수요자’라 함)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아이디어

제2조 (비밀유지의무)

- ① 본인은 본인의 아이디어를 제안/등록한 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본인의 아이디어를 다른 공모전에 제안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.
 - 1. 본인의 아이디어에 대해 거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, 그 계약이 체결되는 날 (단, 거래 계약서에 별도의 비밀유지 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름)
 - 2. 본인의 아이디어에 대한 거래 협상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, 그 협상이 종료되는 날
 - 3. 본인의 아이디어의 제안/등록을 철회하는 경우, 플랫폼에 철회 신청이 접수되어 확정된 날
 - 4. 본인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, 채택되지 않은 사실을 안 날
- ② 본인은 상호평가를 통해 알게 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그 아이디어가 공개되기 전까지 비밀을 유지하겠으며, 허락없이 임의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.
- ③ 본인은 본건 아이디어가 외부로의 누설 또는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아이디어 수요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것입니다.

제3조 (비밀유지 위반에 따른 책임)

본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상기 제2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을 질 것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서약인 _____ (인)